

(2024학년도 제2차)

규 정 심 의 위 원 회

- 일시: 2024. 4. 4.(목), 16:10 ~
- 장소: 문화관 소통룸(402호)
- 심의 안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1	체육부운영에 관한 규정	체육부
2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교원인사팀
3	성과급적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4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 추후 일정

기구명	일시
교무위원회 심의	- 2024.4.9.(화)., 16:10 ~
법인이사회 심의	- 미정(인사에 관한 규정)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체육부운영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체육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 완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체육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역량 기준 확립, 관리체계의 효율성, 균형적 다양성, 시대적 요구에 대응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2024.4.2.)		
개정(안) 주요내용	• 제2조(조직 및 구성) 제1항 문구 개정(안) “체육부에는 부장 및 직원을 두며, 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로 문구 개정		
기대효과	• 체육부 업무 활성화 기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1. 「체육부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우석학원 정관」 연관 부분 발췌 1부 3. 「직제규정」 연관 부분 발췌 1부.		

「체육부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조직 및 구성) ①체육부에는 부장 및 직원을 두며, <u>체육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u> ② <삭 제> ③본교 육성종목은 종목별 지도자로 총감독, 감독 또는 코치를 둘 수 있다. ④총감독은 10년이상 본교 감독으로 재직하고, 해당종목 지도실적, 선수수급 또는 체육회 지원사업 유치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체육부장이 추천하여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⑤감독은 체육부장의 추천으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코치는 감독의 추천으로 체육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⑥육성종목은 태권도(겨루기), 축구(남), 배구(여), 사격(남,여)으로 한다. 단, 본교예산, 선수수급, 체육회 지원, 경기성적 등을 고려하여 육성종목은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조직 및 구성) ①체육부에는 부장 및 직원을 두며, <u>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u> ②~⑥(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부서간 협의 완료(특이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예비군대대장의 훈련 참관 및 지휘로 인한 노고에 따른 책임시간을 감경하고자 함 ※ 지휘관 법정 교육 2회, 학생 예비군 훈련 지휘 5회, 학생 예비군 1차 보충 훈련 2회 등 총 10여회 • 한의학 또는 약학 평가인증(전임교원 대비 책임시간)에 따른 지원책으로 책임시간을 감경하고자 하며, 책임시간 감경을 하는 대신 연구실적물(논문) 제출을 받고자 함 ※ 한의대, 약대 평가·인증 기준: 책임시간 6시간(9시간) ※ 평가기준: 우수 6시간, 권장 9시간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에 책임시간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근거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 제1항2호가목: 보직교원 책임시간 신설(예비군대대장 감경 2시간) - 제3항 호신설: 한의학 또는 약학 평가인증을 위해 책임시간 감경을 하며, 감경에 따른 대체로 연구실적물(논문) 제출을 신설함		
기대효과	• 보직교원 책임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 및 학생 예비군 지휘관 업무 집중화 • 한의학, 약학에 대한 평가·인증 대비 •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활동 환경조성 및 연구역량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 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가. 진천부총장/산학협력부총장 : 0~3시간(연간) (개정 2016.2.18., 2022.5.24.) 나. 교무위원 : 3시간(연간 6시간) 다.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LINC3.0부단장: 4시간(연간 8시간) (신설 2023.8.30.) 라. 행정부서 실·팀장(교직부장,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양교육지원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평생학습지원센터장, 입학지원센터장, RIS지원센터장 포함), 도서관장, 혁신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평생교육원장, 미래융합대학장 : 5시간(연간 10시간) (개정 2014.11.6., 2018.6.28., 2018.10.24., 2019.1.8., 2020.2.19., 2020.3.3., 2021.3.4., 2022.11.16., 2023.8.30., 2023.12.29.) 마. <삭제 2015.2.4.> 바. <삭제 2015.2.4.> 2. 감경시간 가. 감경 2시간 : 한방병원장, 어린이집 관리교수, 체육부장, 우석대학교전주한방문화센터장, 한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자아카데미원장, 신문방송사주간, <신설> (개정 2015.2.4., 2015.2.26., 2015.3.31., 2015.9.23., 2016.2.24., 2019.1.8., 2020.2.19.) 나. 감경 1시간 : 학과(부)장, 전공주임, 외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보건진료센터장, 박물관장, 우영관장, 종합실습본부장, 평생교육주간교수, 대학원전공주임, 공학교육혁신센터 PD교수,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취업역량개발센터장, 창업역량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 산학연교육지원센터장,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 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가. 진천부총장/산학협력부총장 : 0~3시간(연간) (개정 2016.2.18., 2022.5.24.) 나. 교무위원 : 3시간(연간 6시간) 다.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LINC3.0부단장: 4시간(연간 8시간) (신설 2023.8.30.) 라. 행정부서 실·팀장(교직부장,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양교육지원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평생학습지원센터장, 입학지원센터장, RIS지원센터장 포함), 도서관장, 혁신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평생교육원장, 미래융합대학장 : 5시간(연간 10시간) (개정 2014.11.6., 2018.6.28., 2018.10.24., 2019.1.8., 2020.2.19., 2020.3.3., 2021.3.4., 2022.11.16., 2023.8.30., 2023.12.29.) 마. <삭제 2015.2.4.> 바. <삭제 2015.2.4.> 2. 감경시간 가. 감경 2시간 : 한방병원장, 어린이집 관리교수, 체육부장, 우석대학교전주한방문화센터장, 한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자아카데미원장, 신문방송사주간, <u>예비군대대장</u> (개정 2015.2.4., 2015.2.26., 2015.3.31., 2015.9.23., 2016.2.24., 2019.1.8., 2020.2.19.) 나. 감경 1시간 : 학과(부)장, 전공주임, 외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보건진료센터장, 박물관장, 우영관장, 종합실습본부장, 평생교육주간교수, 대학원전공주임, 공학교육혁신센터 PD교수,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취업역량개발센터장, 창업역량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 산학연교육지원센터장,

현 행	개 정 (안)
기술이전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지역혁신센터장,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장,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장 (개정 2008.10.16., 2009.9.3., 2010.6.22., 2012.7.26., 2016.2.24., 2019.1.8., 2020.2.19., 2021.3.4., 2022.11.16., 2023.7.27.) ② <삭제 2012.1.1.> (개정 2006.10.20., 2008.2.20.)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의 연구자로서 연구비지급기관에서 책임시간 조정을 요구한 경우 2.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3. 본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된 경우 <u><호신설></u> 4. 교원이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5. 기타 총장이 책임시간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2.1.1.> (항 신설 2009.11.16.) [조문개정 2008.2.20., 2012.1.1.]	기술이전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지역혁신센터장,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장,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장 (개정 2008.10.16., 2009.9.3., 2010.6.22., 2012.7.26., 2016.2.24., 2019.1.8., 2020.2.19., 2021.3.4., 2022.11.16., 2023.7.27.) ② <삭제 2012.1.1.> (개정 2006.10.20., 2008.2.20.)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의 연구자로서 연구비지급기관에서 책임시간 조정을 요구한 경우 2.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3. 본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된 경우 4. <u>한의학 또는 약학 평가·인증을 위하여 책임시간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단, 감경에 따른 논문실적 제출)</u> 5. 교원이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6. 기타 총장이 책임시간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2.1.1.> (항 신설 2009.11.16.) [조문개정 2008.2.20., 2012.1.1.]
<u>(신설)</u>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성과급적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 충족할 경우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교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탁월한 실력이 있는 교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여 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5조(특별승진) 전문개정 - 특별승진 자격 및 심의 절차 개정 및 신설		
기대효과	● 교원의 경쟁력 강화 및 학교 발전 기여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성과급적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성과급적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에 관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특별승진) <u>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u> <u>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유형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거나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u> <u>경우 한 직급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u>	제15조(특별승진) ①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임용 심의 대상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u> 1. <u>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 충족하고, 해당 유형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경우</u> 2. <u>상위직급으로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 충족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u> 3. <u>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u> ②제1항에 해당 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0.00.]
(신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입안형태	☐ 제 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에 관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승진) <u>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u> <u>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유형분야에서 탁월한</u> <u>성과를 이루거나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u> <u>는 경우 한 직급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실시</u> <u>할 수 있다.</u>	제14조(특별승진) ①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u> <u>우 특별승진임용 심의 대상자 자격을 부여 할</u> <u>수 있다.</u> 1. <u>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u> <u>충족하고, 해당 유형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u> <u>이룬 경우</u> 2. <u>상위직급으로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u> <u>기 충족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u> 3. <u>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u> ② <u>제1항에 해당 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u> <u>를 거쳐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u> [전문개정 2024.00.00.]
(신설)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